

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			
① 사 건	1. 전남행심 제2023-061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. 전남행심 제2023-126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		
청 구 인	② 이 름		
	③ 주 소		
대 리 인 (변호사)	④ 이 름		
	⑤ 주 소		
⑥ 피청구인		⑦ 참 가 인	
⑧ 주 문	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		
⑨ 청구취지	피청구인이 2023. 2. 14.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(3개월)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고,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(3개월) 및 제재부가금 처분(6,012,333원)을 취소한다.		
⑩ 이 유	별지 1에 적은 내용과 같다.		
⑪ 근거법조	「행정심판법」 제46조		
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. 2023. 6. 27.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			

[별지 1]

이 유

【① 제2023-061호,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】

【② 제2023-126호,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】

1. 사건 개요

청구인은 ○○시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○○○어린이집(이하 ‘이 사건 어린이집’이라 한다) 원장이다.

피청구인은 2023. 2. 14. 청구인에게 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(2022. 10., 11.분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)을 교부받았다”는 이유로 “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(3개월),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(3개월), ③ 제재부가금 처분(6,012,333원), ④ 보조금 반환처분(2,004,110원)(이하 위 ①, ②, ③ 처분을 각 ‘이 사건 제1, 2, 3처분’이라 하고, 통칭하여 ‘이 사건 처분들’이라 한다)”을 하였다.

청구인은 2023. 2. 17.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변경을, 2023. 3. 28.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¹⁾.

2. 청구 취지

피청구인이 2023. 2. 14.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(3개월)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고,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(3개월) 및 제재부가금 처분(6,012,333원)을 취소한다.

3. 당사자 주장 요지

1) 이 사건 처분들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「행정심판법」 제37조에 따라 전남행심 제2023-061호, 제2023-126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.

가. 청구인

1) 이 사건 처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

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있었던 보육교사 ○○○은 당소 연장보육교사로 채용되었다가 반 신설로 인해 정교사를 맡게 되었던 사람이다. ○○○은 동료 관계 문제로 정교사로 일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, 당시 청구인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○○○에게 정교사에 비해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연장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. ○○○은 이를 바로 거절하지 않고 청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연락하였고, 이에 청구인은 ○○○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게 되었다.

2) 이 사건 제1처분 관련

① 청구인은 부정 수급 받은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점, ② 청구인이 부정 수급 받은 보조금액은 약 200만원 정도이고, 수령횟수도 2회에 그친 점, ③ 청구인은 2회차 보조금 수령 직전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점, ④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제적 손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마비되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·부당하다.

3) 이 사건 제2처분 관련

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원 78명에 현재 68명이 재원 중인데, 이 사건 제2처분이 유지되면 학부모들은 아이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고,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여야 하는 등 심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.

4) 이 사건 제3처분 관련

이 사건 제2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면 「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

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「공공재정환수법」’이라 한다)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(「영유아보육법」)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 역시 위법·부당하게 된다.

나. 피청구인

1) 이 사건 처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

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여 2022. 11. 22.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·검사하였다. 청구인은 ○○○이 2022. 11. 6.까지 근무한 후 무단결근 중이라며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을 부인하며, 그 증거로 2022. 10., 11.분 교직원 출근부를 제출하였다. 위 출근부는 마치 ○○○이 출근한 것처럼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, ○○○은 위 출근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. 이에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2. 11. 23. 17시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를 열람하였고, 그 결과 ○○○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 청구인은 그때서야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다.

2) 이 사건 제1처분 관련

① 이 사건 처분 기준이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,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, ③ 청구인이 보조금 교부 신청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(2022. 11. 23. 17:31)은 이미 2022. 11. 분 보조금(2차) 교부가 완료된 이후(2022. 11. 23. 13:47)이고,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고지한 점, ④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, 처음부터 허위 진술 및 증거로 피청구인을 기망하려고 한 점, ⑤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얻을 공익이 청구인이 입을 피해보다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이 재량권을

일탈·남용하여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3) 이 사건 제2처분 관련

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는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, 각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4) 이 사건 제3처분 관련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처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, 청구인의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.

4. 관계 법령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, 제40조 제3호, 제45조 제1항 제1호, 제6항, 제45조의2 제1항, 제46조 제1항 제4호, 제51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 제2호, 제26조 제2항 제1호,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38조 제1항, 제2항, 제39조 제1항, [별표 9], [별표 10]

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 나목, 제9조, 제10조 제2항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, [별표 1]

5. 판단

가. 인정 사실

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, 답변서,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. 12. 21.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, 2023. 1. 17. 청문을 실시한 뒤, 2023. 2. 14.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- ☐ 위반사항

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- 2022년 10월, 11월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

☐ 행정처분 내용

○ 개선명령(보조금 반환) - 2,004,110원 [기한 : '23. 2. 28.(화)까지]

○ 제재부과금 부과 - 6,012,330원 [기한 : '23. 3. 31.(금)까지]

○ 어린이집 운영정지 - 3개월 [기한 : '23. 3. 1. ~ '23. 5. 31.]

○ 원장 자격정지 - 3개월 [기한 : '23. 3. 1. ~ '23. 5. 31.]

2) 청구인은 2023. 2. 17.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변경을, 2023. 3. 28.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3)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, 다음과 같다.

① 청구인이 2022. 11. 22. 작성한 확인서에는 “○○○이 2022. 11. 6.까지 근무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무단 결근하였다”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나, 2022. 11. 23. 작성한 확인서에는 “○○○이 2022. 9. 30.까지 근무하였으나, 면직처리를 하지 못하였다. ○○○에 관한 인건비 2022. 10., 11.분을 청구하였다”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.

② 피청구인은 2022. 11. 23. 13:47:37 청구인에게 2022. 11.분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교부하였다.

③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 ○○○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출장지로 하여 출발한 시각은 2022. 11. 23. 17:31이다.

④ 2023. 5. 31. 기준 이 사건 어린이집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정원(명)	아동현원(명)
78	47

⑤ 2023. 5. 31. 기준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	어린이집 유형	어린이집	행정동	정원 (명)	아동현원 (명)	입소가 가능 아동수(명)	차량운행 여부	거리
1	민간	000어린이집	○○○	49	21	28	○	4.1km

2	민간	00어린이집	○○○	42	35	7	○	914m
3	국공립	00어린이집	○○○	20	13	7	×	914m
4	사회복지법인	00어린이집	○○○	106	45	61	○	3.2km
5	가정	00어린이집	○○○	20	20	0	○	377m
6	가정	00어린이집	○○○	20	18	2	○	914m
	총계	6개소		257	152	105		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1) 관계 법령

별지 2에 적은 내용과 같다.

2) 판단

가)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

시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(「영유아보육법」 제46조 제1항 제4호, 제51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6조 제2항 제1호). 이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,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,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,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(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39조 제1항, [별표 10]).

한편,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,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,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·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4두5422 판결 등 참조).

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.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, 설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①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금액, 위반횟수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점, ②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전부 반환되어야 하므로,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, ③ ○○○이 2022. 11. 6.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행위는 피청구인을 기망하려는 행위로 평가되고, 청구인은 이후 위 진실한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의 위반행위를 시인한 점, ④ 청구인이 2022. 11.분(2회차)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시점은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점, ⑤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나)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

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

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(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 제1항 제1호). 이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,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(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 제6항,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38조 제1항, [별표 9]), 시장은 위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,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8조 제2항).

한편,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(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의2 제1항). 영유아보육법령 규정의 문언·취지·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행정청에게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9378 판결).

살피건대, ① 이 사건 제2처분은 앞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,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대신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·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다)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

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(이른바 과다청구)하는 경우,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(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2조 제6호 나목, 제9조 제1항 본문, 제2항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 제1항, [별표 1]). 다만,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고(「같은 법」 제9조 제1항 단서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 제2항),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한다(「같은 법」 제10조 제2항).

살피건대, ①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 신청 행위는 과다청구에 해당하고,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 받은 보조금 금액(2,004,110원)의 3배인 6,012,330원을 제재부가금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,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, ○○○이 마치 2022. 10.~11.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교직원 출근부가 기록된 것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, 피청구인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 신청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,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대신 이 사건 제2처분을 선택한 것이 위법·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 사건 제2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필요적 감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·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.

6. 결론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[별지 2] 관계 법령

【영유아보육법】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~2. (생략)
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3의2~5. (생략)

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·운영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·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(설치·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

1의2~5. (생략)

②~⑤ (생략)

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~③ (생략)

제46조(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)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~3. (생략)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

5~8. (생략)

②~③ (생략)

제5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【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】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(생략)

2. 보육교사 인건비

3~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6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

2~3. (생략)

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】

제38조(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,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제39조(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)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,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~③ (생략)

[별표 9]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38조제1항 관련)

1. (생략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가)~다) (생략) 라)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마) (생략) 2) (생략) 나~저. (생략)	법 제45조 제1항 제1호	운영정지 3개월	운영정지 6개월	시설폐쇄

[별표 10]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39조 제1항 관련)

1. (생략)

2.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~다. (생략) 라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)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)~나) (생략) 다)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	법 제46조 제1항제4호	자격정지 3개월	자격정지 6개월	자격정지 1년

라)(생략)				
2) (생략)				
마~자. (생략)				

【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~5. (생략)

6. “부정청구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가. (생략)
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다~라. (생략)

7~8. (생략)

제9조(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)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, 제재부가금의 부과·납부·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제재부가금의 감면 등) ① (생략)

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

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③~④ (생략)

【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5조(제재부가금 부과·감면의 기준 등)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“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[별표 1]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(제5조 관련)

1.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부정이익 가액	제재부가금 부과율
가.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500%
나.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300%
다.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200%

2~5. (생략)